

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9. 14.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고명욱 의원 등 9명(박왕규, 박종길, 박정환, 정순옥, 장호섭, 남현주, 황국주, 최홍린)
- 발의일자: 2023. 9. 1.(금)
- 회부일자: 2023. 9. 1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3. 9. 14.)

2. 제정이유

-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의 문화생활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지원대상 및 협약의 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지원내용, 지원신청 및 결정에 대해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통지의 의무 및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조, 제30조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
 - 「방송법」 제2조
 -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2조
- 비용추계: 별첨
- 입법예고(2023. 9. 1. ~ 2023. 9. 11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제정조례안은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를 명시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조 및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명시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
- 신체적 불편과 빈곤으로 외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들이 TV 시청 등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달서구 내 65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은 약 1,380명으로 정책대상이 특정되고, 소요비용의 추계 또한 명확하여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필요한 비용과 기대효과가 분명하여 정책의 효율성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지원 대상을 재가 장애인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저소득 가구 등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과의 형평성이 제기 될 수 있고, 취약계층에 대한 다른 지원정책 및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사업 등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,

-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민 복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점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 등을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-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문화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,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한 상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